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법률 제20152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경비지도사에 대한 보수교육제도를 신설하고 경비업자가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법률 제20266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보수교육의 세부사항과 경비지도사 선임·해임의 신고 누락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또는 기계경비업무”를 “, 기계경비업무,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비지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0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제15조제1항제1호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교수(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교수)”를 “조교수”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경비지도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하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40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의 과목이나 시간, 그 밖에 기본교육의 실시
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① 법 제11조의2에 따라 경비업체에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6시간 이상
의 보수교육을 매 2년마다 받아야 한다. 다만, 경비지도사로 선임된 날
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경비지도사로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
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선임된 후 업무에 종사하기 전까지 6시간 이
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과목이나 시간,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
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3제1항
에 따른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그 지
정을 신청해야 한다.

1. 경비·안전 관련 교육과정 운영경력서 및 운영계획서
2. 강사의 인적사항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교육시설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비
·안전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경력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제1항에 따
른 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경비원에 대한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조제1항”을 “법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으로, “일반경비원”을 “경비원”으로, “선임한”을 “선임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5항) 중 “과목 등 일반경비원”을 “과목 및 시간, 그 밖에 경비원”으로 한다.

①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경비원에게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경비원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경비원 신입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경비업자가 채용 전 3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을 특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경비원 교육기관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경비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 경비·안전 관련 교육과정 운영경력서 및 운영계획서

2. 강사의 인적사항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교육시설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비
· 안전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경력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제1항에 따
른 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경비원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경비원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
을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
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이나 장
소에서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행사 주최자 등 관리자에게 경비원
에 의한 경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행사 주최자 등 관리자에게 행사개최 24시
간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2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12조의2에 따른 경비지도사의 선임·해임 신고 등에 관한 사
무

별표 1 제5호란 다음에 제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 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무전기, 경광봉
---------------	---	--------	--------------------------------	--

별표 3 비고 제1호 본문 중 “시설경비업무·호송경비업무·신변보호업무 또는 특수경비업무를”을 “시설경비업무·호송경비업무·신변보호업무·특수경비업무 또는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로, “시설경비업무·호송경비업무·신변보호업무 또는 특수경비업무 중”을 “시설경비업무·호송경비업무·신변보호업무·특수경비업무 또는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중”으로 한다.

별표 6 제4호란 다음에 제4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비지도사	법 제31조제2항제3호의2호	
가. 1년 이내의 기간 경과		100
나. 1년 초과 기간 경과 2년 이내의 기간 경과		200
다. 2년 초과 기간 경과		300

별표6 제5호란 다음에 제5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경비지도사의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제2항제4호의2호	
가. 6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100
나.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200
다. 12개월 초과 기간 경과		400

부 칙

이 시행령은 2024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제7조의3 제1호, 제10조제1호,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3(무자격자 및 부적격자 등의 범위) 다음 각 호의 경비업무를 도급하려는 자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3(무자격자 및 부적격자 등의 범위) ----- ----- ----- ----- ----- ----- ----- ---
1.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 또는 신변보호업무는 제외한다), 호송경비업무 <u>또는 기계경비업무</u>	1. ----- ----- ----- , <u>기계경비업무,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u>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제10조(경비지도사의 구분) 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0조(경비지도사의 구분) <u>경비지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u>
1. 일반경비지도사 : 다음 <u>각목</u> 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1. ----- <u>각 목</u> - ----- -----

경비지도사

가. ~ 라. (생략)

<신설>

2. (생략)

제15조(시험출제위원의 임명·위촉 등) ①경찰청장은 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험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경찰행정학과 등 경비업무 관련학과 및 법학과의 부교수(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2.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비업무에 관한 연구실적이나 전문경력이 인정되는 자

3. 방법 경비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

② ~ ④ (생략)

<신설>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2. (현행과 같음)

제15조(시험출제위원의 임명·위촉 등) ①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

1. -----

----- 조교수 -----

----- 사람

2. -----

----- 인정되는 사람

1. -----

----- 사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 설>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경비지도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하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40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의 과목이나 시간, 그 밖에 기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① 법 제11조의2에 따라 경비업체에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매 2년마다 받아야 한다. 다만, 경비지도사로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경비지도사로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선임된 후 업무에 종사하기 전까지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과목이나 시간,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

<신 설>

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경비지도사 교육기관
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1조
의3제1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교
육기관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
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
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 경비·안전 관련 교육과정 운
영경력서 및 운영계획서

2. 강사의 인적사항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교육시설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
육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
는 경비·안전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경력 및 운영계획의 적절
성,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경
비지도사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①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일반경비원에게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비협회
2.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
3. 경비업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생략)

우 그 사실을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8조(경비원에 대한 교육) ①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경비원에게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경비원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경비업자가 채용 전 3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을 특수경비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법 제12조에 따라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제18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입교육의 과목 및 시간,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과목 등 일반경비원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 법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경비원
----- 선
임된 -----

-----.

<삭 제>

⑤-----

----- 과목 및 시간, 그 밖에 경
비원-----
-----.

제18조의2(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경비원 교육기관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경비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 경비·안전 관련 교육과정 운

영경력서 및 운영계획서

2. 강사의 인적사항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교육시설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
육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
는 경비·안전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경력 및 운영계획의 적절
성,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경비원 교
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경
비원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경찰청 인터넷 홈페
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삭 제>

제19조(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①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
을 채용한 경우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해당 특수경비원에게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
시하는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
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찰
교육기관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비업자는 채용 전 3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경비원을 특수경비원 신입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법 제12조에 따라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입교육의 과목 및 시간,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과목 등 특수경비원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의 요청) 시·도경찰청장은 행사장 그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에

제30조(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의 요청) 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이나 장소에

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사개최일 전에 당해 행사의 주최자에게 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것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사개최 24시간 전까지 시·도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경찰관서장(제31조에 따라 경찰청장 및 경찰관서장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의2 및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의2 및 제9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서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행사 주최자 등 관리자에게 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행사 주최자 등 관리자에게 행사개최 24시간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
1. ~ 9. (생략) <u><신설></u>	1. ~ 9. (현행과 같음) <u>10. 법 제12조의2에 따른 경비 지도사 선임·해임 신고 등에 관한 사무</u>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연 락 처	(02) 3150 - 0950